

조선시대 敎書의 淵源과 分類

심영환* · 노인환**

〈차 례〉

1. 머리말
2. 朝鮮時代 敎書의 淵源
3. 朝鮮時代 敎書의 分類
4.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敎書는 국왕의 의지를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내리는 문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 이러한 교서는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제도화된 문서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즉, 唐의 王言과 宋의 命令이 고려의 문서 제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唐의 論事勅書가 宋에서는 詔書가 되었고, 그것을 고려에서 수용하여 실정에 맞게 교서에 적용하였다. 이후 고려의 교서는 元의 내정 간섭과 明의 문서제도에 영향을 받아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교서의 양식이 정립되었다.

조선시대 교서는 발급 사유에 따라 使命訓諭敎書 · 功臣敎書 · 宗廟配享敎書 · 文廟從祀敎書 · 致仕敎書 · 賞加敎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명훈유교서는 觀察使, 留守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학자료연구실 선임연구원, 전자우편 : syh@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학자료연구실 연구원, 전자우편 : nothing217@aks.ac.kr

※ 본 논문에서 '2. 朝鮮時代 敎書의 淵源'은 심영환이 집필하였고, '3. 朝鮮時代 敎書의 分類'은 노인환이 집필하였다.

등에 임명된 관원에게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발급하였고, 공신교서는 특정한 사건에 功을 세운 功臣을 포상하기 위하여 발급하였다. 종묘배향교서는 종묘에 국왕의 神主와 함께 배향공신의 신주를 配享할 때 발급하였고, 문묘종사교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文廟에 儒賢을 從祀할 때 발급하였다. 치사교서는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관원에게 발급하였고, 상가교서는 功이 있는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려주거나 무신을 2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줄 경우에 발급하였다. 여기서 사명훈유교서는 정기적으로 국왕이 관찰사·유수를 임명할 때 발급되었지만, 나머지 교서들은 모두 특별한 상황에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제어: 敎書, 制書, 詔書, 使命訓諭敎書, 功臣敎書, 宗廟配享敎書, 文廟從祀敎書, 致仕敎書, 賞加敎書

1. 머리말

조선시대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로는 敎書·諭書·批答·綸音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 통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서에 대하여 ‘淵源’과 ‘分類’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敎書의 淵源’은 교서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제도화된 문서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중국 상고시대부터 唐宋까지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으로 넘어 와서 고려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문헌자료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교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교서의 연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어서 ‘敎書의 分類’는 교서의 발급 사유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교서를 분류하였다. 본고에서 분류된 교서는 현재까지 도판 및 실물로 전해지고 있는 교서이며, 관찬자료 및 문집에 轉寫된 교서는 제외하였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교서를 발급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使命訓諭敎書·功臣敎書·宗廟配享敎書·文廟從祀敎書·致仕敎書·賞加敎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교서에 대해서

는 정의·관련 제도·발급 과정·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조선시대 교서에 대하여 그 淵源을 밝히고, 교서의 발급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 교서 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조선시대 교서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朝鮮時代 敎書의 淵源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선시대 왕명문서의 하나인 敎書이다. 따라서 먼저 조선시대 교서를 논하기 전에 그 淵源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교서의 연원을 추적하고, 어떻게 조선시대 교서로 정착되었는지를 문헌과 고문서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의 교서는 국왕이 통치의 의지를 전달하는 가장 큰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기초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전통시대 다른 학술적인 개념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교서의 연원은 역시 중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황제가 세상을 통치할 때 그 말(言)은 신령스럽다. 고요히 침묵하며 黼黻의 앞에 앉아 있어도 메아리가 되어 사방에 가득 차니 오직 詔策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옛날 軒轅(皇帝)과 唐(堯)과 虞(舜)은 똑같이 ‘命’이라고 칭하였다. ‘命’이라는 뜻은 (인간의) 本性을 제어하는 根本이다. 三代(夏·殷·周)에서는 통치할 일이 있으면 ‘誥’와 ‘誓’를 겸하였다. ‘誓’로서 군사(戎)를 훈계하였고, ‘誥’로서 政事를 폈다. (….) 七國(戰國時代)으로 내려와서는 모두 ‘命’이라고 칭하였다. ‘命’이란 ‘시키대(使)’라는 뜻이다. 秦이 천하를 병합하고 ‘命’을 고쳐 ‘制’라고 하였다. 漢初에 儀則을 정할 때 ‘命’에는 네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策書, 둘째는 制書, 셋째는 詔書, 넷째는 戒勅이다.¹⁾

중국 상고시대부터 漢까지의 황제의 의지에 대해서는 南朝 梁의 문인인 劉勰(465~521)의 『文心雕龍』에서 「詔策」의 항목에 잘 정리되어 있다. 유희에 따르면 皇帝나 堯舜의 시대에는 황제의 의지를 ‘命’이라 칭하였고, 삼대(하·은·주)로 내려와서 ‘誥’와 ‘誓’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다시 戰國時代가 되면서 ‘命’은 ‘令’으로 바뀌었고, 秦은 이를 고쳐 ‘制’라고 하였다. 漢은 秦의 제도를 이어 다시 이를 策書, 制書, 詔書, 戒勅으로 나누어 세분화하였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전국시대까지는 命令으로 되고 이후 秦漢이 되면서 ‘制’로 바뀌면서 다시 세분되었다고 보인다.

황제의 命令은 첫째는 策書이고, 둘째는 制書이고, 셋째는 詔書이고, 넷째는 戒書이다.²⁾

후한의 蔡邕(132~192)이 저술한 『獨斷』에는 한 황제의 의지를 命令이라 하고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이때 명령은 前漢 왕조에서 사용하던 古法을 빌려서 황제의 의지를 설명한 것이다.

한 황제의 의지인 命令의 네 종류에 대해서는 채용의 『독단』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에서 출토된 竹簡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는 오오바 오사무(大庭脩)이다.³⁾ 魏晉南北朝 시대 황제의 의지의 발현에 대한 연구는 그리 진척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록의不在일 뿐만 아니라, 출토 유물조차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나카무라 게이치(中村圭爾)의 南朝의 詔,⁴⁾ 혹은 詔勅⁵⁾에 대하여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

1) 梁 劉勰 撰, 『文心雕龍』卷四, 「詔策」第十九. “皇帝御字, 其言也神. 淵嘿黼屨, 而響盈四表, 唯詔策乎! 昔軒轅·唐虞, 同稱爲命. 命之爲義, 制性之本也. 其在三代, 事兼誥誓. 誓以訓戒, 誥以敷政. (….) 降及七國, 並稱曰令, 令者使也. 秦并天下, 改命曰制. 漢初定儀則, 則命有四品. 一曰策書, 二曰制書, 三曰詔書, 四曰戒勅.”

2) 漢 蔡邕 撰, 『獨斷』卷上. “其命令, 一曰策書, 二曰制書, 三曰詔書, 四曰戒書.”

3) 大庭脩(1982)의 ‘第3篇 令に関する研究-漢代の立法手續と令’을 참조할 것.

4) 中村圭爾(1990).

5) 梁鎮誠(2009).

다. 현재로서는 중국 황제의 의지가 가장 자세히 연구되어 있는 시대는 아마도 唐의 王言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고문서학자인 나카무라 히로이찌(中村裕一)는 평생을 거쳐 당의 왕언과 고문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그 진모를 밝혀놓았다.⁶⁾ 나카무라의 연구는 한국의 고대사 중에서도 통일신라시대 이후, 그리고 일본의 경우 고대 율령관제를 시행하던 7-9세기의 시대를 연구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할 중요한 연구성과이다.

조선시대 교서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당의 王言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冊書라고 한다. 황후를 세우고 적장자를 세우고, 藩屏을 봉해서 세우고, 어진 이를 높여 총애하는 명을 내리고, 臨軒해서 예를 갖출 때 사용한다. 둘째는 制書라고 한다. 큰 상벌을 행하고, 큰 관작을 주고, 옛 정치를 고치고, 赦宥와 降慮할 때 사용한다. 셋째는 慰勞制書라고 한다. 어질고 능한 이를 포상해서 찬양하고, 근로를 권면할 때 사용한다. 넷째는 發日勅이라고 한다. 發日을 御畫하는 칙을 이른다. 관원을 증감하고, 주현을 폐치하고, 병마를 징발하고, 관작을 除免하고, 산관6품 이하와 수(守)직사관5품 이상 및 시(視)5품 이상의 관을 제수하고, 流罪 이상의 죄를 처치하고, 창고의 물건 5백단과 돈 2백에서 일천관과 창고의 양식 5백석과 노비 2십인과 말 5십필과 소 5십두와 양 5백구 이상을 쓸 때 사용한다. 다섯째는 勅旨라고 한다. 모든 관사가 황제의 뜻을 받들어 정식으로 삼고, 일을 상주하여 시행을 청할 때 사용한다. 여섯째는 論事勅書라고 한다. 공경을 위유하고 신하를 계약할 때 사용한다. 일곱째는 勅牒이라고 한다. 일에 따라 황제의 뜻을 받들어 옛 전칙을 바꾸지 않을 때 사용한다. 모두 宣行하고 連署하고 申奏하고 覆奏하여 시행한다.⁷⁾

6) 中村裕一(1991a)·(1991b)·(1996)을 참조할 것.

7) 『唐六典』卷9, 中書省, 中書令條. “一曰冊書. 立后建嫡, 封樹藩屏, 寵命尊賢, 臨軒備禮則用之. 二曰制書. 行大賞罰, 授大官爵, 釐革舊政, 赦宥降慮則用之. 三曰慰勞制書. 褒贊賢能, 勸勉勤勞則用之. 四曰發日勅. 謂後御畫發日勅也. 增減官員, 廢置州縣, 徵發兵馬, 除免官爵, 授[散官]六品已下·[守職事五品已上及視品五品已上]官, 處流已上罪, 用庫物五百段·錢二百千·倉糧五百石·奴婢二十人·馬五十疋·牛五十頭·羊五百口已上則用之. 五曰勅旨. 謂百司承旨, 而爲程式, 奏事請施行者[則用之]. 六曰論事勅書. 慰諭公卿, 誠約臣下則用之. 七曰勅牒. 隨事承旨, 不易舊典則用之. 皆宣·署·申·覆, 而施行焉.”

『당육전』에 기록되어 있는 당 황제의 의지 표현인 王言은 모두 일곱 가지이다. 이미 한 대에 비해 세 가지가 늘어난 것으로 위진 남북조와 隋代를 거치면서 專制政治의 구체성과 복잡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을 이어 北宋은 황제의 의지를 命書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命書의 체제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冊書라고 한다. 后妃를 세우고, 親王과 皇子와 大長公主를 봉작하고, 三師와 三公과 三省의 長官을 제배할 때 사용한다. (둘째는) 制書라고 한다. 軍國의 大事를 處分하고, 赦宥의 德音을 반사할 때, 尙書左右僕射와 開府儀同三司와 節度使를 命할 때 大廷에서 宣告하고 除授할 때 사용한다. (셋째는) 誥命이라고 한다. 응당 해야 할 文武官의 職秩을 遷改할 때, 內外命婦의 除授 및 封叙, 법전에 응당 부합하는 命詞를 줄 때 사용한다. (넷째는) 詔書라고 한다. 待制와 大卿監과 中大夫와 觀察使 이상에게 하사할 때 사용한다. (다섯째는) 勅書라고 한다. 少卿監과 中散大夫와 防禦使 이하에게 하사할 때 사용한다. (여섯째는) 御札이라고 한다. 登封과 郊祀와 宗祀 및 大號書를 포고할 때 사용한다. (일곱째는) 勅榜이라고 한다. 酺의 하사 및 百官의 戒勸와 軍民을 曉諭할 때 사용한다.⁸⁾

당의 왕언과 송의 명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 『宋史』卷161, 職官第114, 職官1. “命令之體有七. 曰冊書, 立后妃, 封親王·皇子·大長公主, 拜三師·三公·三省長官, 則用之. 曰制書, 處分軍國大事, 頒赦宥德音, 命尙書左右僕射·開府儀同三司·節度使, 凡告廷除授, 則用之. 曰誥命, 應文武官遷改職秩, 內外命婦除授及封叙, 贈典應合命詞, 則用之. 曰詔書, 賜待制·大卿監·中大夫·觀察使以上, 則用之. 曰勅書, 賜少卿監·中散大夫·防禦使以下, 則用之. 曰御札, 布告登封·郊祀·宗祀及大號令, 則用之. 曰勅榜, 賜酺及戒勸百官, 曉諭軍民, 則用之.”

〈표 1〉 唐의 王言과 宋의 命令

차례	唐의 王言	宋의 命令
1	冊書	冊書
2	制書	制書
3	慰勞制書	誥命
4	發日勅書	詔書
5	勅旨	勅書
6	論事勅書	御札
7	勅牒	勅榜

당의 왕언과 송의 명령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冊書와 두 번째 制書를 제외하고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명칭이 다르므로 동일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책서는 당초까지는 高官의 임명에도 사용되었지만 중기로 접어들면서 책서는 폐지되고 制書로 高官의 임명을 하게 되었다.⁹⁾ 그러므로 冊書는 唐宋 왕조의 가장 중요한 황제의 의지이지만 실제적인 국가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의 의지는 制書가 차지하게 되었다.

당 制書의 양식은 나카무라 히로이찌(中村裕一)가 開元 7년(719)의 관제에 준거하여 다음과 같이 복원하였다.

9) 당의 관원 임명에 대한 개괄은 大庭脩(2003)를 참조.

〈표 2〉 中村裕一 復元 制書式¹⁰⁾

門下 云云 主者施行 年月御畫日	中書令具官封臣 姓名 宣 中書侍郎具官封臣 姓名 奉 中書舍人具官封臣 姓名 行
侍中具官封臣 名 黃門侍郎具官封臣 名 給事中具官封臣名 等言.	
臣聞云云 臣等云云 無任云云之至 謹奉 制書如右 請奉 制付外施行 謹言 年月日	
可 御畫	凡制勅宣行, 大事則稱揚德澤, 褒美功業, 覆奏而請施行, 小事則署而頒之. 覆奏畫可訖, 留門下省爲案. 更寫一通, 侍中注制可, 印縫署, 送尙書省施行. 中書令若不在, 卽於侍郎下注宣, 舍人姓名下注奉行.

唐宋에서 制書는 국가정무의 大事(中事와 小事도 있음)를 처리할 때 사용하던 황제의 의지이다. 制書의 起頭語는 門下로 시작하고 이어서 황제의 의지를 中書省 3官의 하나인 中書舍人(후대는 翰林學士도 참여)이 작성한다. 〈표 2〉의 첫 번째 줄 門下 다음에 ‘云云’이 바로 중서사인이 황제의 의지를 대신하여 지은 글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하는 제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곧 제서는 국가의 대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중서성의 起草, 문하성의 審議와 覆奏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중국 당송의 국가정무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大事는 制書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서의 안에는 황제의 의지를 표현하는 長文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大事인 만큼 이 장문의 문장은 散文이 아닌 韻을 포함하고 있는 駢儷文으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는 『辭學指南』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송의 王應麟이 편찬한 『玉海』에는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여러 문체를 공부하는 안내서인 수험 공구서로서 『사학지남』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는 송 황제의

10) 中村裕一(2003), 50면.

명령에 대한 양식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놓았는데, 곧 ‘制’와 ‘誥’와 ‘詔’이다. 『辭學指南』에 나오는 이들 문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¹¹⁾

〈표 3〉 『辭學指南』에 나타난 송의 명령

차례	명령	문서 양식
1	制	門下 云云 具官某 云云 於戲 云云 可授某官 主者施行
2	誥	勅 云云 具官某 云云 可特授某官
3	詔	勅門下[或云勅某等] 故茲詔示[獎諭·誠諭·撫諭 隨題改之] 想宜知悉

먼저 (1)‘制’는 起頭가 ‘門下’로 시작하고 있고, 結辭가 ‘主者施行’인 것으로 보아 송의 명령 중에서 制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의 제서는 물론 당의 왕언 중의 하나인 제서와 같은 성격과 양식을 가지고 있다. (2)‘誥’는 기두가 ‘勅’으로 시작하고 있고 ‘制’보다 1등급 낮은 명령으로 誥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誥命은 문서양식과 성격으로 보아 당의 왕언 중에 發日勅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詔’는 기두가 ‘勅門下’ 혹은 ‘勅某’로 되어 있고, 문서의 결사 문언이 ‘故茲詔示 想宜知悉’로 되어 있다. 결사 부분에 있는 ‘詔示’라는 문구에 의하여 詔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詔’에 포함된 ‘故茲詔示 想宜知悉’이라는 結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天禧 원년(1017) 2월에 學士院이 “詔勅의 詞尾는 모두 ‘故茲詔示’나 ‘故茲示諭’로 말하고, 한편으로는 ‘想宜知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으로 諸道の 進奉과 相承에는 모두 ‘詔示·示諭’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詔詞는 각각 嘉獎의 뜻이 있으므로 또한 각각 그 뜻을 표시하여 ‘示諭’라고 일러야 하니, 지금 添入하고자 합니다.”¹²⁾

11) 宋 王應麟 撰, 『玉海』 卷202, 『辭學指南』.

12) 宋 洪遵 編, 『翰苑群書』 卷12, 『翰苑遺事』. 天禧元年二月, 學士院言: “詔勅詞尾, 並云‘故茲詔

북송대 詔書의 결사는 ‘故茲詔示 想宜知悉’로 끝난다. 위의 인용은 북송 眞宗 天禧 원년(1017) 學士院의 진언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당송에서 황제의 의지 발현에 ‘詔’자를 사용한 것은 북송대 들어서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황제가 내리는 詔書에 모두 ‘故茲詔示 想宜知悉’과 같은 문구를 사용한 시기는 북송의 3대 황제인 진종 천희 원년(1017)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1〉 고려 경종 즉위년(975) 金傳告身

勅, 姬周啓聖之初, 先封呂主. 劉漢興王之始, 首冊蕭何. 自此大定奠區, 廣開基業. 立龍圖三十代, 躡麟趾四百年. 日月重明, 乾坤交泰. 雖自無爲之主, 乃關致理之臣. 觀光順化衛國功臣·上柱國·樂浪王·政丞·食邑八千戶金傳. 世處雞林, 官分王爵. 英烈振凌雲之氣, 文章騰擲地之才. 富有春秋, 貴居茅土. 六韜三略, 拘入胸襟. 七縱五申, 撮歸指掌. 我太祖, 須載接陸擲之好, 早認徐風. 尋時頒駙馬之姻, 內酬大節. 家國既歸於一統, 君臣宛合於三韓. 顯播令名, 光崇懿範. 可加號尚父·都省令, 仍賜推忠慎義崇德守節功臣號, 勳封如故, 食邑通前爲一萬戶. 有司擇日, 備禮冊命, 主者施行.

開寶八年十月 日

大匡·內議令·兼摠翰林 臣 翮 宣·奉·行

奉

勅如右, 牒到奉行.

開寶八年十月 日

侍中(署)

侍中(署)

內奉令(署)

軍部令(署)

軍部令(無署)

兵部令(無署)

示·‘故茲示諭’, 方云‘想宜知悉’, 內諸道進奉相承, 並不言‘詔示·示諭’. 竊思詔詞, 各有嘉獎之意, 亦各標云‘示諭’, 今欲添入[國朝會要].”

兵部令(署)

廣評侍郎(署)

廣評侍郎(無署)

內奉侍郎(無署)

內奉侍郎(署)

軍部卿(無署)

軍部卿(署)

兵部卿(無署)

兵部卿(署)

告推忠愼義崇德守節功臣·尙父·都省令·上柱國·樂浪都王·食邑一萬戶金傅奉

勅如右, 符到奉行.

主事(無名)

郎中(無名) 書令史(無名)

孔目(無名)

開寶八年十月 日 下

고려 경종 즉위년(975) 10월에 金傅를 尙父·都省令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이 문서는 고려초기의 문서로 실물로 전하지 않고 『삼국유사』 권2 「紀異」 金傅大王조에 문서양식을 보존한 전사본이 전한다.¹³⁾ 이 문서는 중국 당송의 告身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金傅告身이라고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勅授告身の 양식을 취하고 있다. 당의 고신은 制授告身(5품이상 임명), 奏授告身(6품이하 임명), 勅授告身(산관 6품이하가 직사관 5품이상에 임명)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당시 김부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太子보다도 상위인 관직에 임명하기 때문에 이 문서는

13) 이외에도 『高麗史』 권2 「景宗世家」, 『東文選』 권25, 「制誥」 '新羅王金傅加尙父都省令官誥敎書' 에도 문서양식을 제외한 본문이 전하고 있다.

당송의 제도로 이야기하면 冊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곧, 문서의 내용에 봉작에 관계되므로 冊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문서의 양식은 勅書로 한 것이다.

네모 안의 내용이 김부를 상보·도성령에 임명하는 고려 국왕인 경종의 의지이다. 이 문장은 물론 두 줄 밑에 나오는 內議丞 翽이 摠翰林의 兼職으로 작성하였다. 駢儷文으로 작성되어 宣讀을 위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2〉 고려 고종 3년(1216) 慧謨告身

<p>[門下. 秦后尊羅什之說法, 奉待以師禮. 隋皇重靈幹之禪定, 召主於道場. 惟帝王之尊僧, 在古今而同軌. 苟有離倫之開士, 盍頒進律之異恩. 禪師慧謨, 戒行水清, 襟靈玉潔. 早脫煩惱之縛, 高參覺苑之遊. 不由靈山之拈花, 得法眼藏. 不暇少林之立雪, 傳自心燈. 拭明鏡之光而無塵可侵, 觀止水之淵而波浪不動. 專提祖印, 開示妙門. 法流蒼菴之林, 行副苾芻之範. 淡泊如瀉水, 洋洋乎盈耳哉. 待問而撞鐘, 循循然誘人也. 實謂三劫之鴻願, 豈唯一世之儀鎬. 雖真人□無名焉, 遠在兒孫之香火. [遺]命依必有尊也, 特加緇袂之丕襍. 可特授大禪師. 於戲! 崇真所謂爲邦, 示賞所以勸善. 尊行慕道, 朕盡禮以命師. 弘法利人, 師乃竭力而談說. 往諧乃職, 永孚于法. 主者施行.]</p>

貞祐四年正月 日

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兵部事 臣 崔(草押)

朝散大夫·尙書兵部侍郎·充史館修撰官·知制誥 臣 李(草押)

門下侍郎平章事

給事中 玄(草押) 等[言]

制書如右, 請奉

制附[付]外施行, 謹言.

貞祐四年正月 日

制可

[禮] 部尙書

[禮] 部侍郎

[尙] 書左丞

告大禪師, 奉被

制書如右, 符到奉行.

禮部郎中

主事 朴

令史 韓

書令史 黃

乙亥九月十三日 下

고려 고종 3년(1216)에 慧諱을 大禪師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이 문서는 당의 문서양식 중 制授告身の 영향을 받아 작성되었다. 역시 네모 안의 문장은 고종이 혜심을 대신사로 임명하는 고종의 의지로 이 문장은 知制誥인 李가 작성을 하였다.

앞서 『辭學指南』에 나오는 宋 命숙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혜심고신은 송의 ‘制’ 곧 制書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혜심고신이 ‘門下 云云 具官某 云云 於戲 云云 可授某官 主者施行’이라는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혜심고신이 작성될 당시의 制詞(制書의 본문)는 宋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김부고신은 『사학지남』에 나오는 송의 명령의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 송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의 제도를 참작하여 만든 독자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有司擇日, 備禮册命, 主者施行.’이라는 문구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헌에 재록된 문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시대 문인인 崔澐(1287-1340)의 『東人之文四六』(1338년 撰) 권6 敎書에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있다.¹⁴⁾

14) 崔澐의 『東人之文四六』은 『高麗名賢集』(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0)을 참고하였다. 책의 서지사항과 가치에 대해서는 千惠鳳 교수의 해제를 참조할 것.

〈자료 3〉『東人之文四六』卷6 教書

① 獎諭征西元帥金富弼 鄭沆

教某。省所上狀，擒捉逆賊，定疊京城事，具悉。朕惟逆籬趙匡，以瑣瑣小醜，據險陸梁，連誅既久，非不知乘，將卒欲戰之心，併力剪除，俾無遺種，乃緣西都，是始祖肇興王業之地，又念生齒之衆多，皆吾赤子，不忍一切屠滅之，故詔命開諭，至于再三，庶幾匡等，易心歸順，以體朝廷矜恤之典，此卿之所具知也。自從元惡妙清等，見殲於帳下之後，豈嶺失策，賊情一變，則戡定之功，似不可以一二日期也。卿以文武之才，都將相之任，寬得士心，沈機妙物，凡所臨賊制禦之術，不煩諮問，已熟於胸中，始而排築城寨，以休養士卒，終起土山，以壓賊壘，大軍突入，巢穴皆空，卒使逆類，望風自潰，束手出降，已而不賴[頓]一弋下，全城於反掌，決不踰時，收萬世之偉績，非卿特明果毅萬全之策，不能至此，而以副寡人委付之意也。嘉獎之深不能自已。今差使文林郎·樞密院右承宣·尙書吏部侍郎·知制誥·賜紫金魚袋李之氏，副使徵事郎·殿中少監·知尙書兵部事·賜紫金魚袋林儀等，齎持詔書，往彼宣諭，并賜例物，具如別錄，至可領也。應五軍員將士卒，顯著功績，逐便件析聞奏，當行爵賞。故茲詔示，想宜知悉。春暄，卿比安好，遺書，指不多及。

② 回元帥金富弼平西獻捷 崔誠

教某等。左軍兵馬判官·前試閣門祗候魯洙至，省所上表，今年二月十九日味爽，潛師入侵，賊徒奔敗，不能拒縛，僞元帥崔永收，副元帥趙匡，死尸相率出降，尋入城，洒掃宮闕，安撫軍民事，具悉。朕以寡昧之資，託于士民之上，不能制理于未亂，保邦于未危。乃者，叢爾西都之人，謀爲大逆之事，詐稱制旨，而發動軍馬，僞立年號，而欺罔人神，勢固非常，罪難可赦。因在庭之僉望，遂命將以徂征，卿奮不顧身，慨然受鉞，誅佞臣於輩下，首除內應之姦，嚴師律於軍中，悉備合攻之計，然以欲殄殲其元惡，不將殺戮於脅從，先作巨堙，以推沮賊謀，或投大石，以壞破城屋，然後俾衆卒銜枚而突入，卽群姦束手以出降，既蕩濫於妖氛，仍慰安於父老，非特雪宵旰憂勞之念，抑亦消中外憤鬱之懷，自非卿察委危利害之機，知先後緩急之便，則何以不勞攻戰，盡服頑凶，從初用事者，雖是昔年，及其收功，則在於一旦。昔者，高宗之伐叛國，周公之得罪人，皆三載而乃平，猶萬世而稱美。偉歟！今日之事，足爲青史之光。

朕嘗遣近臣，特加獎諭，今覽抗章之賀，備申歸美之誠，省閱之餘，歎嘉無已。故茲詔示，想宜知悉。春暄，卿等比平安好，遺書，指不多及。

③ 獎諭征西都知兵馬金正純 崔誠

敎某。惟逆賊趙匡等，以幕鸞鼎魚之勢，且延晷刻之命，敢拒官軍，莽有餘月，師老財窮，爲害不小，倂來奏捷，實慰朕心。昔唐近臣守謙，以偏將從事於丞相裴度幕下，助平淮蔡，事載于史，以今觀之，無愧前輩，不有嘉獎，何以勸人。今賜卿金腰帶一條，金花銀匣重肆拾兩，緋羅夾複，全宜祗領也。故茲詔示，想宜知悉。春暄，卿比平安好，遺書，指不多及。

④ 宣召元帥 崔誠

敎某。朕以止戈爲武，聖人之格言已事，則竣臣子之所守，淮蔡平而裴相入，徐方定而召公還，於古有諸，在今何異。卿自有過人之才，量常期濟世之功名，屬西賊之擅興，摠元戎而薄伐，殊弗識孫吳之法，拙速以成所，庶幾堯舜之兵，不戰而屈，督將士以忠義，列城寨以屯營，策決萬全，動無一失，制群賊有折箠之易，措中原於奠枕之安，緊卿之功，惟朕以懌詩不云乎。自天子所謂我來矣，此朕所以召卿之意也。宜副仰成之重，以棘獻凱之旋。今差衛尉少卿·賜紫金魚袋裴景誠，賫持詔書，往彼宣詔。故茲詔示，想宜知悉。春暄，卿比平安好，遺書，指不多及。¹⁵⁾

이 4점의 문서는 모두 妙淸의 난 때 당시 征西元帥였던 金富弼이 서경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왕이 내린 문서이다.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論事勅書가 宋나라의 詔書가 되고 그것을 수용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¹⁶⁾ 문서의 모두가 '敎'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詔書나 勅書가 아닌 敎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까지 고려시대의 敎書(여기서 인용한 교서는 구체적으로는 獎諭

15) 『東人之文四六』 권6 「敎書」(『高麗名賢集』,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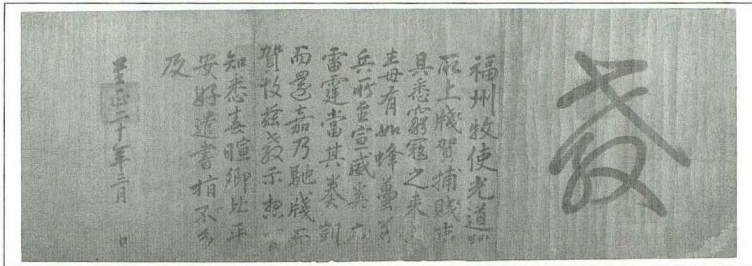
16) 沈永煥(2007).

敎書)는 당의 論事勅書와 송의 詔書(혹은 勅書)의 양식을 혼재하여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재의 양식은 문서의 기두어는 ‘敎某’로 나타나는데, 結辭는 ‘故茲詔示 想宜知悉 春暄 卿等比平安好 遣書 指不多及’로 나타나는데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 고려시대 獎諭敎書의 結辭

宋의 詔書(勅書)	唐의 論事勅書
故茲詔示 想宜知悉	春暄 卿等比平安好 遣書 指不多及

고려초에는 국왕의 명령을 詔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성종 5년(986)에 와서야 詔를 敎로 고쳤다.¹⁷⁾ 따라서 문서의 기두어도 이 영향으로 ‘敎’이라고 써야 할 부분을 ‘敎’라고 작성한 것 같다. 그러나 結辭에는 여전히 ‘故茲詔示’에서 보듯이 ‘敎’자가 아닌 ‘詔’자를 사용하고 있다.



〈도판 1〉 고려 공민왕 9년(1360) 鄭光道 敎書¹⁸⁾

17) 『高麗史』 世家3, 성종 5년 3월. “始以詔稱敎.”

18) 이 문서는 현재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번지 太師廟에 소장되어 있으며 三功臣遺物 등과 함께 보물451호로 지정되어 있다. 문서의 크기는 61×174cm이고 楮紙에 필사되어 있다.

〈자료 4〉 고려 공민왕 9년(1360) 鄭光道 敎書 석문

敎
 福州牧使光道. [覽]
 取上牋, 賀捕賊事,
 具悉. 窮寇之來, [肆]
 毒有如蜂蠆, 義
 兵所至宣威, 奚[管]
 雷霆. 當其奏凱
 而還嘉, 乃馳牋而
 賀. 故茲敎示, 想[宜]
 知悉. 春暄, 卿比平
 安好, 遣書, 指不多
 及.
 至正二十年三月 日.

이 문서는 고려 공민왕 9년(1360) 3월에 홍건적의 격퇴 소식을 듣고 牋을 올려 경하한 福州牧使 鄭光道에게 恭愍王이 내린 敎書이다. 그런데 이 문서는 고려시대 元의 내정간섭기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達魯花赤가 힐난하기를 “宣旨·朕·赦라는 말을 하는데 어찌 참람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왕(충렬왕)이 僉議中贊 金方慶과 左承宣 朴恒을 시켜 해명하기를 “감히 참람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祖宗에서 서로 전해오던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宣旨를 王旨로, 朕을 孤로, 赦를 宥로, 奏를 芻으로 고쳤다.¹⁹⁾

19) 『高麗史』世家28, 충렬왕 1년 2월 23일. 達魯花赤詰之曰: “稱宣旨, 稱朕, 稱赦, 何僭也?” 王使 僉議中贊金方慶, 左承宣朴恒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고려는 원의 다루가치(達魯花赤)의 횡난에 이전의 황제국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제후국의 용어로 고쳤다. 『高麗史』에는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宣旨·朕·赦·奏를 王旨·孤·宥·로으로 고쳤다. 하지만 위의 인용은 대략을 말한 것으로 제도 전반에 걸쳐서 수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해의 『東人之文四六』에 실려 있는 인종 시대의 교서와 비교하면 정광도 교서는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 우선 敎자를 크게 문두에 썼고 ‘覽取上牋’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전의 ‘省所上表’ 등에서 표현하였던 ‘省’자가 ‘覽’자로 바뀌었다. 또 尾詞인 ‘故茲詔示 想宜知悉’이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尾詞의 문구가 ‘詔’에서 ‘敎’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앞의 충렬왕 원년의 원의 내정 간섭으로 바뀌었다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고려 말에 운용되던 교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5〉 答領司平府事河崙進樂章敎書²⁰⁾

王若曰, 蓋聞君臣之間, 貴於進戒, 聲樂之道, 在乎象成. 故九敘之歌, 禹既戒之, 賡載之歌, 皋陶亦陳之, 此虞廷君臣交相警戒, 以興至治者也. 迨乎成周, 其道饒備, 雅頌之作, 洋洋至今. 惟卿天資明敏, 學術精微, 所見之正, 卓爾甚高, 所守之堅, 確乎不拔. 入而陳謨, 必盡其規益, 出而施政, 必極其精詳. 嘗戮力以定社, 又殫誠而佐命, 嘉乃丕績, 再與同盟, 俾長庶寮, 以輔予治. 今觀所進觀天廷受明命樂章二篇, 匪直詠歌, 切於陳戒, 惟予之入觀也. 臣子職分之當然, 其受命也. 天子恩數之幸及, 其在否德, 皆無可歌, 卿乃作為詩歌, 以寓勸勉規戒之意, 蓋欲永思其艱, 以保其成於無窮也. 忠義之誠, 譎然可嘉, 矧其辭義之雅, 聲氣之和, 可以追配古之作者, 亦可以傳於後世也. 觀覽之際, 良深感愧, 已令有司, 被之管絃, 以爲宴享之樂, 不忘規戒之辭. 於戲. 七德舞歌, 雖可愧事功之不逮, 五言出納, 宜益在治忽而罔愆. 遺書, 指不多及, 故茲敎示, 想宜知悉.

曰王旨, 朕曰孤, 赦曰宥, 奏曰呈.

20) 『陽村先生文集』卷30, 敎書類. ‘答領司平府事河崙進樂章敎書’.

조선 태종 2년(1402)에 河崙이 樂章 2편을 지어 태종에게 올리자 태종이 내린 교서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고려시대 敎書에는 없던 ‘王若曰’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초기 교서의 기두어에 ‘王若曰’이 사용된 것은 明의 문서제도의 영향이다. 조선초기 明의 황제가 조선에 문서를 보낼 때 ‘皇帝若曰’이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²¹⁾ 따라서 조선초기에는 전통적인 양식과 새로운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조선초기 공신교서의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조선초기 功臣敎書 양식

敎某 王若曰 云云 於戲 云云 故茲敎示 想宜知悉 年月日

조선초기 공신교서의 양식에서 ‘王若曰’은 기왕의 양식에는 없는 새로운 양식이다. 그런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당송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확립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최후로 다음과 같이 敎書의 양식을 확립하였다.

〈표 6〉 조선시대 敎書의 양식

敎某書 王若曰 云云 於戲 云云 故茲敎示 想宜知悉 年月日
--

조선시대의 敎書의 양식은 조선초기 공신교서의 양식에서 1행의 ‘敎某’에서 ‘敎某書’로 ‘書’자 1자를 추가하여 완성하였다. 이로써 명실공히 조선의 국왕이

21) 구체적인 사례는 박성호(2010)를 참조할 것.

자신의 의지를 공적으로 전달하는 양식이 확립된 것이다.

3. 朝鮮時代 敎書의 分類

앞에서 살펴본 2. 朝鮮時代 敎書의 淵源은 문서사적인 측면에서 교서의 淵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교서의 발급 사유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교서를 분류하고자 한다. 여기서 분류할 대상 자료는 현재 실물 문서로 전해지고 있는 교서이며,²²⁾ 발급 사유에 따라 使命訓諭敎書·功臣敎書·宗廟配享敎書·文廟從祀敎書·致仕敎書·賞加敎書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교서에 대하여 정의·관련 제도·발급 과정·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使命訓諭敎書

조선시대 使命訓諭敎書²³⁾는 觀察使, 留守 등에 임명된 관원에게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에 국왕이 관찰사·유수 등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는 조선시대 교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었다. 이 때문에 사명훈유교서는 조선시대의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교서라고 볼 수 있다.

사명훈유교서의 발급 및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국왕이 관찰사·유수 등을 새로 임명하면 임명장에 해당하는 告身을 해당 관원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어서 새로 임명된 관원은 국왕에게 사은숙배를 한 후에 부임지로 부임하였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전임 관원과 빨리 교대하여 부임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사은숙

22) 문헌 자료에 수록된 교서의 경우에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23) 최승희(1989)는 觀察使, 留守 등에게 발급하는 교서에 대하여 '使命訓諭敎書'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배를 면제받고 부임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해당 관원에게 교서를 전달하였는데, 교서가 사은숙배 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임명된 관원이 국왕에게 사은숙배할 때 국왕이 교서를 전달하였다.²⁴⁾ 이에 반하여 사은숙배 전에 교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임명된 관원이 사은숙배를 면제받고 부임하였을 때에는 承政院의 書吏나 禁軍을 보내서 교서를 전달하였다.²⁵⁾ 교서를 製述하고 正書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명훈유교서를 발급받는 관직으로는 觀察使, 留守, 統制使, 統禦使, 都體察使가 있다.

관찰사는 중2품 관직으로 조선 건국 직후에는 고려의 제도를 준용하여 按廉使로 불리었는데, 1393년(태조 2) 9월에 按廉使를 폐지하고 觀察黜陟使로 불리었다.²⁶⁾ 이후 태종 1년(1401) 1월에는 각 道의 都觀察黜陟使를 按廉使로 개칭하였다가 다시 태종 2년(1402) 1월에 都觀察黜陟使 제도를 복구하였고,²⁷⁾ 최종적으로 세조 12년(1466) 1월에 관제를 개정할 때에 도관찰출척사에서 관찰사로 개칭되었다.²⁸⁾ 세조 12년(1466) 1월 이후부터 관찰사에게 발급된 사명훈유교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전하는 교서 중에서는 연산군 3년(1497) 8월에 충청도관찰사 權柱에게 발급된 교서가 가장 이른 시기의 사명훈유교서이다.

24) 『승정원일기』 1458책, 정조 4년(1780) 2월 12일(신유). … 趙時俊進前, 上曰, 今此嶺伯, 予則曰可謂得人, 而慶尙道, 國之本也, 宣化立綱, 專在於監司, 往其懋哉. … 上命讀敎諭書, 讀訖, 上曰, 敎諭書親受後, 開青陽正門, 使之出去.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25) 『승정원일기』 284책, 숙종 7년(1681) 8월 14일(갑오). 李寅煥啓曰, 公洪道兵符, 旣已造成, 監司·水使敎諭書, 使院書吏, 齎持下送, 舊兵符, 收取上送, 以爲燒火之地事, 下諭. 傳曰, 允.

『승정원일기』 2706책, 고종 3년(1866) 9월 12일(무진). 又啓曰, 新除授京畿水使鄭雲翼, 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以前水使徐相稷所受仍佩, 敎諭書則安寶, 使禁軍罔夜齎傳, 何如? 傳曰, 允.

26)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1393) 9월 13일(을묘). 罷按廉, 復觀察黜陟使.

27)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1401) 1월 24일(갑신). 改各道都觀察黜陟使爲按廉使.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1402) 1월 20일(계묘). 復諸道都觀察黜陟使.

28) 『세조실록』 권38, 12년(1466) 1월 15일(무오). … 都觀察黜陟使改爲觀察使. …



〈도판 2〉 연산군 3년(1497) 8월 충청도관찰사 權柱 使命訓諭教書

留守는 조선 전기에 開城府에만 두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인조 5년(1627)에 江華府에 留守를 두었고,²⁹⁾ 이후 정조 17년(1793)과 19년(1795)에 각각 水原府와 廣州府에 留守를 두었다.³⁰⁾ 이들 4곳에는 모두 2명의 留守를 두었는데, 2명 중에 1명은 모두 京畿觀察使가 겸직하였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가 발급되었다. 아울러 경기관찰사가 겸직하지 않은 留守에게도 모두 사명훈유교서가 발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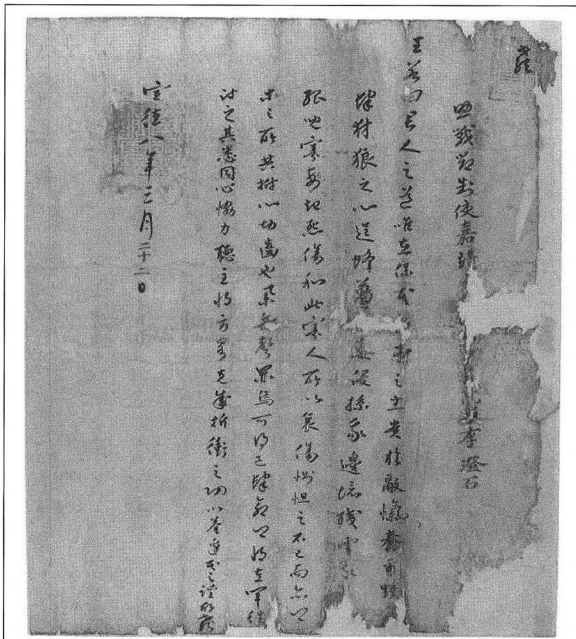
관찰사와 유수 이외에도 조선 후기에 설치된 統制使와 統禦使로 임명된 관원에게 교서가 발급되었다. 統制使는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1593)에 설치되어 경상·전라·충청도의 수군을 통솔하였다. 統禦使는 인조 11년(1633)에 설치되어 경기·충청·황해도의 수군을 통솔하였다. 이 밖에 임진왜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都體察使로 임명된 柳成龍에게 발급된 교서도 있다.

사명훈유교서는 관찰사에게 자신의 부임지를 잘 다스릴 것을 당부하는 내용

29)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江華府. 《續》掌治江都. 《增》原, 都護府, 光海戊午, 陞府尹, 仁祖朝丁卯, 置留守.
 30)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水原府. 《補》掌治華城. 《原》都護府, 正宗朝癸丑, 置留守, 今移錄.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廣州府. 《補》掌治南城. 《原》牧使, 宣祖朝丁丑, 陞府尹. 正宗朝乙卯, 置留守, 今移錄.

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관찰사에게 교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지엄한 국왕의 명령을 명심하고 관찰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는 관찰사에게만 교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찰사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관찰사에게 소속된 절도사·방어사나 군·현의 수령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통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명훈유교서는 조선 초기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실물 문서로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교서는 세종 15년(1433) 3월에 助戰節制使 李澄石에게 발급된 교서이다. 반면에 가장 늦은 시기에 발급된 교서는 고종 27년(1890) 6월에 충청도관찰사 宋世憲에게 발급된 교서이다. 이러한 사명훈유교서는 현재까지 실물 문서 및 도판 자료로 73건이 전해지고 있다.



〈도판 3〉 세종 15년(1433) 3월 助戰節制使 李澄石 使命訓諭敎書

2) 功臣敎書³¹⁾

조선시대 功臣敎書는 특정한 사건에 공을 세운 功臣을 포상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에 공신의 錄勳은 태조 1년(1392) 開國功臣부터 영조 4년(1728) 揚武功臣까지 모두 28번 행해졌으며, 이 때 약 천 여명의 공신에게 공신교서를 발급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사명훈유교서는 정기적으로 국왕이 관찰사를 임명할 때 발급되었지만,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공신으로 녹훈되는 경우가 비정기적이며, 또한 28번만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두 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공신교서의 발급 사유를 살펴보면, 역모나 반란의 진압에 공을 세운 공신에게 공신교서를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역모나 반란의 경우는 국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에게 공신교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전체 28번 중에서 13번이며, 대표적으로는 세조 13년(1467)에 일어난 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敵愾功臣, 선조 때 鄭汝立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平難功臣, 인조 때 李适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振武功臣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우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에게 공신교서를 발급하였다. 이 경우는 전체 28번 중에서 9번으로 새로운 국왕의 즉위와 관련된 공신으로는 조선 초기에 정종과 태종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定社功臣·佐命功臣이 있으며, 세조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靖難功臣·佐翼功臣이 있다. 또한 반정공신으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靖國功臣과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定社功臣이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으로는 명종 때의 衛社功臣과 광해군 때의 定運功臣 그리고 경종 때의 扶社功臣이 있다.

31) 2. 功臣敎書는 노인환(201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을 세운 공신에게도 공신교서를 발급하였다. 즉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봉진을 扈從하는데 공을 세운 扈聖功臣과 왜군의 격퇴에 공을 세운 宣武功臣이 있으며, 또한 광해군의 分朝를 扈從하는데 공을 세운 衛聖功臣이 있다. 이 밖에 공신교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조선왕조의 개국에 공을 세운 開國功臣과 성종을 잘 보좌하고 선정을 베푼 공을 세운 佐理功臣,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宗系를 改錄해 줄 것을 주청하는 宗系辨誣를 성공시키는데 공을 세운 光國功臣이 있다.

이어서 공신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면, 공신교서의 발급은 국왕의 명에 의하여 임시 관청인 都監을 설치한 후에 도감에서 이루어졌다. 즉, 조선 전기에는 功臣都監을 설치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공신도감의 명칭이 錄勳都監으로 변경되면서 녹훈도감에서 공신교서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에서는 공신으로 녹훈할 인원과 공신의 명칭 그리고 포상 내역 등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결정된 후에는 공신교서를 製述하고 書寫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왕의 어보를 安寶하면서 공신교서가 발급되었다. 이러한 발급 과정은 추후에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에서 儀軌 또는 謄錄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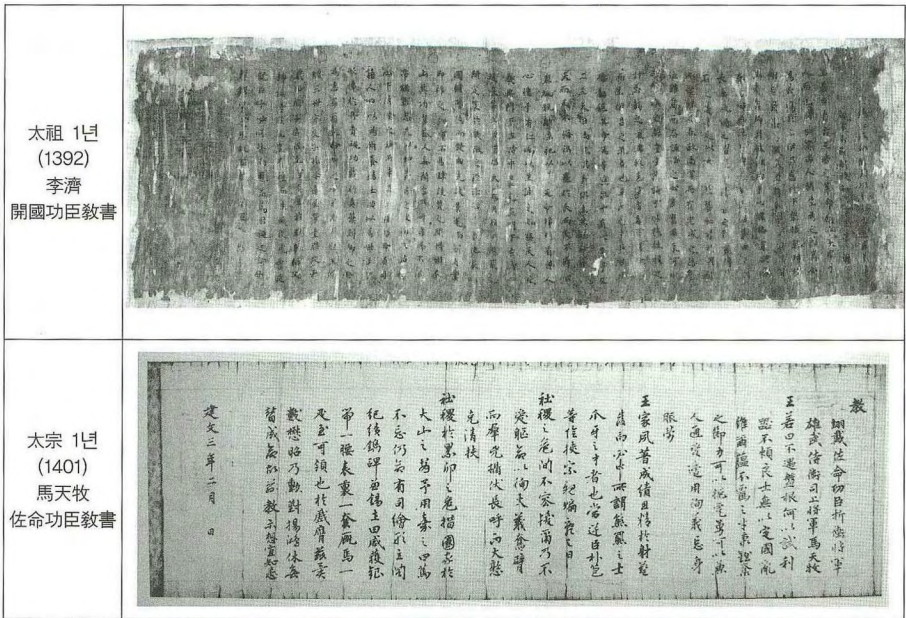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른 교서와 달리 공신교서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서의 수취자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공신교서는 문서의 첫 행에 ‘敎’字만을 擡頭하였고, 두 번째 행부터 功臣號·品階·官職·姓名을 기재하였다. 여기서 功臣號는 공신으로 녹훈될 때 功에 따라 국왕이 공신에게 내려주는 칭호인데, 1등 공신일 경우에 가장 길었으며, 2등~4등으로 내려갈수록 2자 또는 4자씩 공신호를 줄였다. 예를 들어 敵愾功臣의 경우에 1등의 공신호는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이며, 2등과 3등은 ‘精忠出氣敵愾功臣’과 ‘精忠敵愾功臣’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공신교서의 본문에 공신의 업적과 포상 내역을 기재한다는 것이다. 공신의 업적에는 먼저 관련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제도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어서 개별적인 업적을 제시하여 공신으로 녹훈된 사유를 기재하였다. 포상 내역에는 伴尙·奴婢·丘史와 田·銀·表裏·內廐馬 등을 1

등부터 4등까지 차등 있게 기재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공신교서에 공신 명단을 기재한다는 것이다. 공신 명단을 공신으로 함께 녹훈된 사람들의 성명을 각 등별로 기재한 것이다. 공신 명단을 공신교서에 기재하는 것은 조선이 건국된 직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즉, 태조 1년(1392) 李濟 개국공신교서와 태종 1년(1401) 馬天牧 좌명공신교서를 살펴보면 공신 명단이 없고,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다음 행에 곧바로 발급 시기가 기재되었다. 공신 명단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현존하는 공신교서 중에는 세조 13년(1467) 적개공신교서부터 공신 명단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도판 4〉 開國功臣教書 · 佐命功臣教書 · 敵愾功臣教書



32) 靖難功臣教書와 佐翼功臣教書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교서에 공신 명단이 기재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신교서는 태조 1년(1392) 開國功臣敎書부터 영조 4년(1728) 揚武功臣敎書까지 67건이 실물 문서 및 도판 자료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3) 宗廟配享敎書 · 文廟從祀敎書

宗廟配享敎書는 재위 기간 동안에 국왕을 잘 보좌하거나 특별한 공이 있는 신하를 국왕의 사후에 配享功臣으로 정하고 종묘에 국왕의 神主와 함께 배향공신의 신주를 配享할 때 발급하는 문서이며, 文廟從祀敎書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文廟에 儒賢을 從祀할 때 발급하는 문서이다. 두 敎書는 모두 문서 수취자의 死後에 발급된다는 점과 문서 수취자를 결정할 때 당시 집권한 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먼저 종묘배향교서에서 배향공신은 선왕의 삼년상이 끝나고 선왕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하기 전에 미리 결정되었다. 만약 배향해야 할 신하가 선왕보다 오래 살 경우에는 사후에 논의하여 결정한 후에 追配되었다. 이러한 배향공신은 태조부터 순종까지 총 97명이 종묘에 배향되었다. 여기서 단종과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었고, 사도세자와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경우에는 배향공신이 있었다.

배향공신을 선정할 때에는 大提學이 후보자가 적힌 圈點記를 써서 내오면, 時任大臣 · 議政府의 左右參贊 · 六曹의 判書가 圈點하여 결정되었다.³³⁾ 이후 종묘

33)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圈點記, 大提學書出, 而時任大臣 · 政府西壁 · 六卿圈點.[大提

배향교서의 草案를 知製敎가 작성하여 예문관에서 올리면 승정원이 국왕에게 교서 초안을 入啓하였다. 교서 초안에 “奉敎可”라고 기재하고 啓字印을 踏印하여 국왕이 결제하면 승정원의 注書가 正書하였고, 正書한 교서를 다시 국왕에게 入啓하여 御寶를 安寶한 후에 종묘배향교서가 발급되었다.³⁴⁾

종묘배향교서는 仁祖의 廟庭에 배향된 李元翼·申景禎과 孝宗의 廟庭에 배향된 金尙憲·宋時烈에게 발급된 문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표 7〉 宗廟配享敎書

차례	연월일 (왕력)	발급	수취	내용	寶印	세로	가로	출처
1	孝宗 2년(1651) 6월 30일	孝宗	李元翼	李元翼을 仁祖의 廟庭에 配享함.	施命之寶	88.5	364	충원박물관(2005), 『오리 이원의 종가의 이야기』, 64쪽
2	孝宗 2년(1651) 6월 30일	孝宗	申景禎	申景禎을 仁祖의 廟庭에 配享함.	施命之寶	미상	미상	金文雄 所藏
3	顯宗 2년(1661) 6월 30일	顯宗	金尙憲	金尙憲을 孝宗의 廟庭에 配享함.	施命之寶	83	483	서울대학교 도서관(1986),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57~58쪽
4	正祖 2년(1778) 4월	正祖	宋時烈	宋時烈을 孝宗의 廟庭에 配享함.	施命之寶	118.5	714	국립청주박물관(2007), 『우암 송시열』, 270~271쪽

이원의·신경진에게 발급된 교서와 김상헌·송시열에게 발급된 교서는 문서 양식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원의·신경진에게 발급된 교서를 살펴보면, 先王인 仁祖와 관련된 용어는 모두 두 글자를 擡頭하였고, “敎”字와 “王若曰”은 한 글자를 擡頭하여 문서의 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상헌·송시열에게 발급된 교서에서는 先王인 孝宗과 관련된 용어와 “王若曰”이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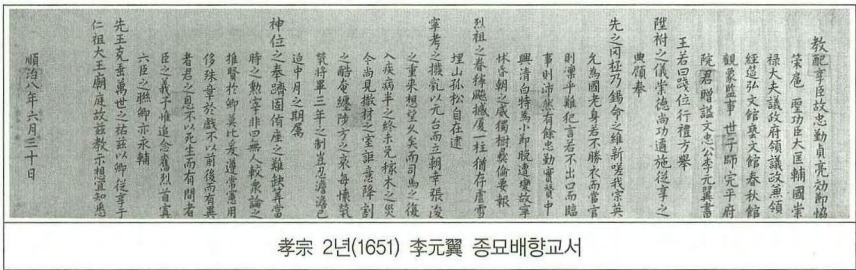
學以下文任及三司長官, 不爲參圍, 原任大臣, 亦不參圍.]

34)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配享臣敎書, 自藝文館來呈, 入啓, 啓下後, 奉敎可判付, 自堂后, 依道臣敎書例正書, 祔廟前期入啓, 寶啓請安寶, 獻官受香時傳授, 使忠實衛奉持出去, 本家無祝, 直以敎書讀之, 廟庭配享時, 又有都敎書, 依此舉行.

동일하게 한 글자만 擡頭하였으며, “敎”字는 擡頭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발급 시기를 살펴보면, 이원익·신경진에게 발급된 교서는 중국 연호를 기재하였지만, 김상헌에게 발급된 교서는 “辛丑六月三十日”로 기재하였으며, 송시열에게 발급된 교서는 “戊戌四月”로 기재하여 중국 연호 대신에 干支를 기재하였다.

중요배향교서가 4건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顯宗 연간에 들어와서 擡頭 방식과 발급 시기를 기재하는 방식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판 5〉 李元翼과 金尙憲에게 발급된 중요배향교서



孝宗 2년(1651) 李元翼 중요배향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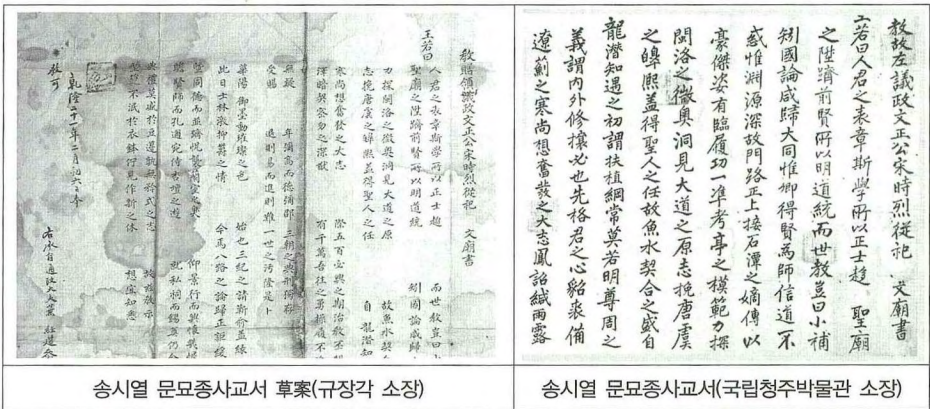


顯宗 2년(1661) 金尙憲 중요배향교서

이어서 文廟從祀敎書에 대해 살펴보면, 文廟에는 공자와 함께 四聖·孔門十哲·宋朝六賢의 位牌와 우리나라의 18賢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문묘에 종사된 우리나라의 18賢 가운데 설총·최치원·안향은 고려시대에 문묘에 종사되었고, 나머지 15賢은 조선시대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즉, 조선시대에는 종종 12년(1517)에 처음으로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였고, 이후 광해군 2(1610)부터 고종 20년(1883)까지 총 7번의 문묘종사를 시행하였다.

중종 12년(1517)에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할 때 문묘종사교서를 발급했는지는 관련된 사료도 없고 문서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며, 이후 문묘에 종사된 김장생·송준길·송시열·김인후·조헌에게 발급된 총 7건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7건의 문묘종사교서는 ‘教’字와 ‘書’字 사이에 추증된 관직과 시호·성명을 기재하고 이어서 교서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從祀文廟’의 용어를 기재하였다. 발급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종묘배향교서와 동일한 과정으로 발급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송시열에게 발급된 문묘종사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草案이 남아있고, 국립청주박물관에는 正書되고 御寶가 安寶된 송시열 문묘종사교서가 남아있는데, 草案에 있는 “奉教可”와 啓字인쇄이 앞에서 언급한 종묘배향교서의 발급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6〉 영조 32년(1756)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草案과 敎書



송시열 문묘종사교서 草案(규장각 소장)

송시열 문묘종사교서(국립청주박물관 소장)

김인후에게 발급된 문묘종사교서의 경우에는 정조 20년(1796) 10월 26일과 같은 해 11월 7일에 동일한 내용의 교서가 2번 발급되었다. 당시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10월 26일에 정조가 김인후에게 제사를 내려주었고(賜祭),³⁵⁾ 11월 8일에 文廟에서 酌獻하고 교서를 선포하였는데,³⁶⁾ 이 때 동일한 내용으로 2번 교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文廟從祀敎書

차례	연월일 (왕력)	발급	수취	내용	寶印	세로	가로	출처
1	肅宗 43년(1717) 5월 18일	肅宗	金長生	金長生을 文廟에 從祀함.	施命 之寶	88	630	충남 유형문화재 제128호
2	英祖 32년(1756) 2월6일	英祖	宋浚吉	宋浚吉을 文廟에 從祀함. 敎書의 草案.		118	83	서울대학교 도서관(1986),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62~63쪽
3	英祖 32년(1756) 2월 6일	英祖	宋時烈	宋時烈을 文廟에 從祀함. 敎書의 草案.		118	83	서울대학교 도서관(1986),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60~61쪽
4	英祖 32년(1756) 2월	英祖	宋時烈	宋時烈을 文廟에 從祀함.	施命 之寶	117	374	국립청주박물관(2007), 『우암 송시열』, 266~267쪽
5	正祖 20년(1796) 10월 26일	正祖	金麟厚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함.	施命 之寶	104	400	국립광주박물관(2007),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178~179쪽
6	正祖 20년(1796) 11월 7일	正祖	金麟厚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함.	施命 之寶	111	365	국립광주박물관(2007),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180~181쪽
7	高宗 20년(1883) 11월 20일	高宗	趙憲	趙憲을 文廟에 從祀함.	施命 之寶	110. 6	78	보물 제1007-4호, 조헌 관련 유품

4) 致仕敎書

致仕는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관원이

35)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1796) 10월 26일(무술). 賜祭于文正公金麟厚.

36)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1796) 11월 8일(기유). 行酌獻于文宣王廟, 從祀文正公金麟厚于聖
廡. 宣敎書曰, 眞儒後千載生, 政合崇報之典, 公議待百年定, 爰舉躋享之儀. 表而出之, 道所存也.

...

致仕할 때에 국왕은 致仕敎書를 발급해 주었다. 이러한 致仕 제도는 조선시대 이전에도 있었는데, 『禮記』 「曲禮」 上에는 대부는 나이가 칠십이 되면 일을 그만둔다(大夫七十而致事)는 구절이 있고, 이 구절에 의거하여 新羅와 高麗에서는 致仕하는 제도가 있었다.³⁷⁾ 또한 『三國史記』나 『高麗史』에서도 致仕와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는 崔正華에게 발급된 致仕敎書가 수록되어 있어 고려시대에도 致仕敎書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致仕 제도는 시행되었다. 태조 연간에는 羅世와 朴形이 각각 參贊門下府事와 藝文春秋館太學士로 致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정종 1년(1399) 5월과 정종 2년(1400) 4월에는 門下府에서 대소 신료 가운데 나이가 70세인 사람에게 致仕를 허락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며,⁴⁰⁾ 태종 16(1416) 5월에는 河崙이 자신의 致仕를 청하면서 70세에 致仕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다.⁴¹⁾ 즉, 조선 초기에 致仕는 관습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정종과 태종 연간에 이르러 구체화 되었으며, 결국에는 『경국대전』에서 법제화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당상관으로 致仕된 사람에게는 禮曹와 해당 고을에서 달마다 술과 고기를 보내라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致仕하는 관원에게는 致仕敎書를 발급해 주었는데, 致仕敎書는 藝文館의 관원이나 知製敎가 製述하여 올렸다.⁴³⁾ 致仕敎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왕이 親臨

37) 『增補文獻備考』 권228, 職官考 15, 致仕. 新羅高麗, 皆依禮經, 有致仕之法. … 高麗之制, 朝臣年七十, 例爲致仕.

38) 『三國史記』 新羅本紀 7, 文武王. 十六年, … 宰相陳純乞致仕, 不允, 賜几杖.
『高麗史』 권80, 志 34, 食貨3, 俸祿, 致仕官祿. 仁宗朝定, 三百石[門下侍中中書令], 一百八十石五斗[門下平章中書平章事], …

39) 『東國李相國集』 권34, 敎書 麻制 官誥. 崔正華爲銀青光祿大夫樞密使戶部尙書致仕敎書官誥各一道, 敎書, 云云, 大抵大夫以縱縱當作從]心之年, 據經乞退, 是雖禮之常也, …

40)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1399) 5월 1일(庚午). … 自今大小臣僚年七十者, 許令致仕, 各就私第, 雖未至七旬, 而不宜職事者, 亦不許檢校之職. …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1400) 4월 6일(辛丑). … 年老勤舊, 不可授職七十已上者, 請循前朝之制, 仍令致仕, 俾不失祿, 檢校散秩, 一皆革之. …

41)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1416) 5월 25일(丙辰).

42) 『경국대전』 「禮典」 惠恤. 堂上官致仕者, 及功臣父母妻, 堂上官妻, 年七十以上者, 本曹本邑月致酒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배하고 내려온 후에 경복궁의 崇陽門이나 창덕궁의 延英門 밖에서 교서를 전달하였고, 대신이 輔國大夫 이상일 경우에는 빈청에서 전달하였으며, 비록 병이 있더라도 국왕의 特敎가 아니면 대신 받을 수 없었다.⁴⁴⁾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70세가 되었으나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관직이 1품에 이르고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사람으로 국가의 重輕事에 관계되어 致仕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禮曹에서 아뢰어 几杖을 내려준다.’라는 조항이 있으며,⁴⁵⁾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신하가 致仕를 청하였지만, 국왕이 윤허하지 않고 几杖을 하사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세기 초에 편찬된 『芝峰類說』에서도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⁴⁶⁾

국왕이 致仕를 윤허하지 않고, 几杖을 하사할 때에도 敎書를 발급하여 전달하였다. 이 때 교서는 예문관에서 製述하였으며, 几杖은 工曹에서 만들었다. 賜几杖敎書는 해당 관원의 집에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교서는 注書가 陪進하여 宣讀하고 几杖은 承政院의 承旨가 전해 주었다. 賜几杖敎書를 받은 관원은 다음날에 箋文을 올려 謝恩하였으며, 국왕이 親臨하여 几杖을 하사할 경우에는 당일 箋文을 올려 謝恩하였다.⁴⁷⁾

이렇게 致仕할 때나 致仕를 윤허하지 않고 賜几杖할 때에 국왕이 敎書를 발급해 주는 것은 조정의 연로한 대신을 禮遇하는 측면에서 교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賜几杖敎書의 경우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문집에는 賜几杖敎書가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⁴⁸⁾ 반면에 致仕敎書의 경우에는 英祖

43) 『六典條例』 「禮典」 〈禮曹〉, 〈總例〉. 致仕敎書, 令藝文館撰進, 而月致酒肉事節目啓下, 頒示候司.

44) 『銀臺條例』 「禮攷」 〈宣麻〉. 奉朝賀宣麻文, 肅謝日[單致仕無肅謝等節.]該房承旨, 啓稟後, 詣崇陽門外.[東闕則延英門外] 傳授.[雖有身病, 非特敎, 毋得替受.]

45) 『經國大典』 「禮典」 惠恤. 官至一品年七十以上, 係國家重輕, 不得致仕者, 本曹啓聞賜几杖.

46) 『芝峰類說』 권4, 〈官職部〉, 〈致仕〉. 七十致仕法也, 而祖宗朝以來, 致仕者蓋鮮, 大臣請老, 則賜几杖而已.

47) 『六典條例』 「禮典」 〈禮曹〉, 〈典客司〉, 〈賜與〉. 賜几杖敎書.[藝文館撰出] 注書陪進宣讀, 几杖[工曹造成], 承旨傳授, 翌日進箋謝恩.[親臨賜几杖則即日進箋謝恩]

50년(1774)에 李最中에게 발급된 교서와 哲宗 11년(1860)에 趙冀永에게 발급된 교서, 그리고 고종 연간에 李憲文에게 발급된 교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표 9〉 致仕敎書

차례	연월일 (왕력)	발급	수취	내용	寶印	세로	가로	출처
1	英祖 50년(1774) 6월 9일	英祖	李最中	李最中の 致仕를 허락함.	施命 之寶	102	179	서울대학교 도서관(1986),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65쪽
2	哲宗 11년(1860)	哲宗	趙冀永	趙冀永의 致仕를 허락함.	施命 之寶	111.2	153.5	국립중앙박물관(2004), 『古文書』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72쪽
3	高宗연간 12월 17일	高宗	李憲文	李憲文의 致仕를 허락함.	施命 之寶	112	152	국립중앙도서관(2008), 『고문서해제』 V -교령류3-, 159쪽

5) 賞加敎書

賞加敎書는 관련된 문헌 사료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문서도 적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6건의 상가교서를 살펴보면, 문서 양식적인 측면에서 ‘敎’字와 ‘書’字 사이에 ‘賞加’라는 용어가 기재된 교서이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功이 있는 관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품계를 올려줄 때 발급하는 교서이다.

이러한 賞加敎書는 조선 중기에 시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명종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知經筵事 李彦迪이 포상으로 加資된 原州牧使·楊州牧使에게 교서를 발급해서 보내면 권면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아뢴 내용을 확인할

48) 『梧里先生文集』附錄 권3, 〈敎諭書〉. 賜几杖敎書.[九月初六日, 趙韓韓製進.] 王若曰, 卿今老矣, 豈合趨走於朝, 予欲安之, 斯有几杖之錫, 端由至敬, … 於戲, 國方倚卿, 宜倚几而治國, 卿實扶國, 可扶杖而安卿. 故茲敎示. 想宜知悉.

수 있다.⁴⁹⁾ 또한 선조 27년(1594)에는 六鎭 오랑캐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鄭見龍을 加資하고 敎서를 발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⁵⁰⁾

현재 전해지고 있는 6건의 상가교서는 선조 29년(1596)부터 인조 2년(1624) 사이에 발급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상가교서는 선조 29년(1596)에 洪可臣에게 발급된 상가교서이다. 이 문서는 李夢鶴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洪可臣을 通政大夫로 加資하는 상가교서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자료로 남아있다.⁵¹⁾ 이외에 5건의 상가교서가 실물 문서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광해군 3년(1611) 李愼儀, 광해군 8년(1616) 宋德駟, 광해군 9년(1617) 申之悌, 光海君 14년(1622) 南以興, 仁祖 2년(1624) 崔應一에게 발급된 상가교서이다.

〈표 10〉 賞加敎書

차례	연월일 (왕력)	발급	수취	내용	寶印	세로	가로	출처
1	宣祖 29년(1596) 7월 21일	宣祖	洪可臣	李夢鶴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通政大夫(정3품)로 加資함.	施命之寶	84	212	국사편찬위원회, 사자 0600
2	光海君 3년(1611) 1월 20일	光海君	李愼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는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라 通政大夫(정3품)로 加資함.	施命之寶	미상	미상	全義李氏 所藏
3	光海君 8년(1616) 8월 16일	光海君	宋德駟	평상시에 군사들을 잘 단속하고, 두 번이나 달아난 오랑캐 朴守希를 붙잡은 공을 세워 嘉善大夫(종2품)로 加資함.	施命之寶	87	157.5	국립중앙박물관(2004), 『古文書』-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70쪽

49) 『명종실록』 권3, 명종 1년(1546) 2월 30일(丁巳). 上御夕講. 知經筵事李彥迪曰, “... 中宗朝, 陞 守令, 以彰善惡, 苟有異效, 或至加資, 或賜表裏, 以褒獎之. 凡敎書之至, 守令拜迎, 故百姓從 動咨嗟, 隣官欽慕遷善. 頃者原州·楊州牧使等, 以本道監司書狀, 褒加賞資, 復舉中宗朝故事, 若 又下送敎書以諭之, 則從動之事, 必多矣.”

50) 『선조실록』 권56, 선조 27년(1594) 10월 12일(丙辰). 備忘記曰, 鄭見龍爲先賞加. 前例如此之事, 必作敎書頒示.

51)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1596) 7월 1일(丙寅). 論討賊功, 牧使洪可臣加資陞秩.

4	光海君 9년(1617) 5월 12일	光海君	申之悌	明火賊 鄭大立를 붙잡은 공을 세워 通政大夫(정3 품)로 加資함.	施命 之寶	35	176	한국학중앙연구 원(2005), 『고문서집성』77 -의정 이주신씨 오봉가문·호계 가문편-, 325~326쪽
5	光海君 14년(1622) 8월 15일	光海君	南以興	明나라 監軍을 잘 대접한 공을 세워 資憲大夫(정2 품)로 加資함.	施命 之寶	83	202	중요민속자료 제21-5-2호
6	仁祖 2년(1624) 7월 15일	仁祖	崔應一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通 政大夫(정3품)로 加資함.	施命 之寶	91.6	190	국립중앙박물관 (1997), 『朝鮮時代古文書 』, 50~51쪽

이 가운데 宋德駟·申之悌·南以興에게 발급된 상가교서는 수취자의 공을 문서 첫 행에 기재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李愼儀 상가교서는 문서 첫 행에 ‘敎海州牧使李愼儀賞加書’로 기재하여 官職과 姓名만 기재하였지만, 申之悌 賞加敎書는 문서 첫 행에 敎昌原府使 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盡心跟捕賞加書’로 기재하여 姓名 아래에 수취자의 공을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건의 상가교서에서 加資된 품계를 살펴보면, 通政大夫가 4건이고 嘉善大夫와 資憲大夫가 각각 1건으로 모두 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로 加資되었다. 이것은 通政大夫가 정3품 당상관의 품계라는 점에서 볼 때, 상가교서는 功이 있는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려줄 경우에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수취자를 분석해보면, 通政大夫로 加資된 4명은 모두 문신이지만, 嘉善大夫로 加資된 宋德駟과 資憲大夫로 加資된 南以興은 모두 무신이었다. 조선 시대 무신의 경우에는 정3품 折衝將軍이 가장 높은 반열이고 종2품으로 加資될 경우에는 문신의 품계를 따랐다. 이를 통해 볼 때, 상가교서는 功이 있는 무신을 2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줄 경우에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 전기나 후기에는 상가교서와 관련된 사료나 실물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선 중기에 한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교서에 대하여 그 淵源을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현전 문서를 중심으로 발급 사유에 따라 교서를 분류하였다.

조선시대 교서의 淵源은 중국에서 황제의 의지를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내리는 가장 큰 문서를 각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上古時代부터 戰國時代까지는 ‘命書’로 되었고, 이후 秦漢에서는 ‘制’로 바뀌면서 다시 策書·制書·詔書·戒勅으로 세분되었다. 이어서 唐과 宋에서는 唐의 王言과 宋의 命書가 각각 일곱 가지가 있었다. 즉, 唐의 王言으로는 冊書·制書·慰勞制書·發日勅書·勅旨·論事勅書·勅牒이 있었고, 宋의 命書으로는 冊書·制書·誥命·詔書·勅書·御札·勅榜이 있었다. 이 가운데 唐과 宋의 制書는 실제적인 국가 정무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의 의지를 발현하였다. 唐의 王言과 宋의 命書는 고려의 문서 제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唐의 論事勅書가 宋의 詔書가 되었고, 그것을 고려에서 수용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敎書에 적용하였다. 이후 고려의 敎書는 元의 내정 간섭과 明의 문서제도에 영향을 받아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교서의 양식이 정립되었다.

조선시대 교서의 분류는 발급 사유에 따라 使命訓諭敎書·功臣敎書·宗廟配享敎書·文廟從祀敎書·致仕敎書·賞加敎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使命訓諭敎書는 觀察使, 留守 등에 임명된 관원에게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발급하였고, 功臣敎書는 특정한 사건에 공을 세운 功臣을 포상하기 위하여 발급하였다. 宗廟配享敎書는 종묘에 국왕의 神主와 함께 배향공신의 신주를 配享할 때 발급하였고, 文廟從祀敎書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文廟에 儒賢을 從祀할 때 발급하였다. 致仕敎書는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관원에게 발급하였고, 賞加敎書는 공이 있는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려주거나 무신을 2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줄 경우에 발급하였다. 여기서 使命訓諭敎書는 정기적으로 국왕이 관찰사를 임명할 때 발급되었지만, 나머지 교서들은 모두 특별한 상황에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교서 가운데 실물 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 때문에 사료와 문집 등에 轉寫된 교서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조선시대 교서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唐六典』
『宋史』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東文選』
『經國大典』
『大典會通』
『銀臺便攷』
『六典條例』
『銀臺條例』
『增補文獻備考』
梁 劉勰 撰, 『文心雕龍』
漢 蔡邕 撰, 『獨斷』
宋 王應麟 撰, 『玉海』
宋 洪遵 編, 『翰苑群書』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權近, 『陽村先生文集』
李睟光, 『芝峰類說』
李元翼, 『梧里先生文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1980), 『高麗名賢集』

2. 연구논저

노인환(2011),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9, 한국고문서학회.

박성호(2010),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 『전북사학』 제36호, 전북사학회.

沈永煥(2007), 「高麗時代 獎諭敎書 樣式」, 『藏書閣』 1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梁鎭誠(2009), 「南朝에서 詔, 勅의 정립과 그 運用」,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승희(1989), 『韓國古文書研究』 改正增補版, 지식산업사.

大庭脩(1982), 『秦漢法制史の研究』, 創文社.

_____(2003),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 『唐告身と日本古代の位階制』, 皇學館.

中村圭爾(1990), 「南朝における詔」, 『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 刀水書房.

中村裕一(1991a),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_____(1991b), 『唐代官文書研究』, 中文出版社.

_____(1996), 『唐代公文書研究』, 汲古書院.

_____(2003), 『隋唐王言の研究』, 汲古書院.

The origin and the classification of Gyoseo

Shim, Young-hwan* · Noh, In-hwan**

Gyoseo(教書) was the most authoritative document addressing the will of a king through a public system in Joseon. Not an original invention from Kore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yoseo was influenced by China. Basically, Tang Dynasty's wangyan(王言) and Song Dynasty's mingling(命令) gave influence to the documental institution of Goryeo, and specifically, Tang's lunshichishu(論事勅書), later becoming zhaoshu(詔書) in Song, was introduced and edited to become gyoseo in Goryeo. Later gyoseo went through several more changes in details due to Yuan's intervention of Goryeo's internal affairs and the influence of Ming's documental institution, which finally established the form of gyoseo in Joseon Dynasty.

Gyoseo in Joseon can be categorized into several genres such as Samyeonghunyū-gyoseo(使命訓諭教書), Gongsin-gyoseo(功臣教書), Jongmyobaehyang-gyoseo(宗廟配享教書), Munmyojongsa-gyoseo(文廟從祀教書), Chisa-gyoseo(致仕教書), Sangga-gyoseo(賞加教書). Samyeonghunyū-gyoseo was issued to newly appointed local administrators like provincial magistrates(Gwanchalsa, Yusu), requesting them of good governance of the area concerned. Gongsin-gyoseo was issued to a vassal of merit, rewarding for the specific

* Senior Researcher, Classical Materials Research Division, Jangseogak, E-mail : syh@aks.ac.kr

** Researcher, Classical Materials Research Division, Jangseogak, E-mail : nothing217@aks.ac.kr

meritorious event. Jongmyobaehyang-gyoseo was issued for the vassal of merit whose spiritual tablet(Sinju) made acceptance into Royal Ancestral Shrine(Jongmyo) along with that of King's. Munmyojongsa-gyoseo was issued to renowned scholars who attained the qualification of being sacrificed to in National Confucian Shrine(Munmyo). Chisa-gyoseo was issued to retiring administrators due to age. Sangga-gyoseo was issued to raise administrative grade of danghagwan to dangsangwan who had meritorious contribution, or to raise more than two administrative grades of a military official. Here, every gyoseo was issued at special occasions, except for Samyeonghuny-gyoseo which was regularly issued when a local magistrate was appointed.

Key Words : Gyoseo(敎書), Zhishu(制書), Zhaoshu(詔書), Samyeonghuny-gyoseo(使命訓諭敎書), Gonsin-gyoseo(功臣敎書), Jongmyobaehyang-gyoseo(宗廟配享敎書), Munmyojongsa-gyoseo(文廟從祀敎書), Chisa-gyoseo(致仕敎書), Sangga-gyoseo(賞加敎書).

본 논문은 2011년 12월 29일 투고되어 2012년 2월 10일 심사를 완료하여
2012년 2월 17일 게재를 확정하였음.